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423
------	------

제출일자 : 2023. 11. 15.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개정이유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로당 지도·감독 결과에 따른 처분 사유 및 지원 근거조항을 추가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경로당 보조금 지원 조항 추가(안 제6조제1항제7호 신설)
- 나.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 다. 경로당 지도·감독 결과에 따른 처분 사유 추가(안 제8조제2항 제3호 및 제4호 신설)
- 라. 모범경로당 선정 및 지원 조항 신설(안 제8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 다. 협의기관: 해당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 2) 입법예고: 2023. 10. 11. ~ 2023. 10. 31 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 4) 규제사전심사: 별도시행(기획예산과)
 - 5) 부패영향평가: 별도시행(민원감사담당관)
 - 6)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시행(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로당 등록 회원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4. 경로당 내 사행성 행위 및 영리행위 조장, 회원 상호 간 잦은 분쟁 등으로 경로당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③ 구청장은 지도·감독 및 평가를 통하여 모범경로당을 선정할 수 있으며, 지원등급 산정 시 가점부여, 표창 또는 지원물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6. (생 략) <신 설> 7. (생 략) ②·③ (생 략) <신 설>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u>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u>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하여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u>지역봉사지도원</u> 을 위촉할 수 있다. ② <u>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u> 2. <u>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 지도</u> 3. <u>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u> 4. <u>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u>

제8조(지도·감독 등)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설> <신 설> 3. (생 략) <신 설>	제8조(지도·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2. (현행과 같음) 3. <u>경로당 등록 회원수가 20명 미만인 경우</u> 4. <u>경로당 내 사행성 행위 및 영리행위 조장, 회원 상호 간 잦은 분쟁 등으로 경로당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u>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u>구청장은 지도·감독 및 평가를 통하여 모범경로당을 선정할 수 있으며, 지원등급 산정 시 가점부여, 표창 또는 지원물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u> <삭 제>
제11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	

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예상비용 연평균 1억미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개정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경비가 연평균 1억 미만 이므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어르신장애인과 인생이모작팀 최현숙
연 락 처	2627 - 1394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0. 14.]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874호, 2016. 10. 14.,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2호의 경로당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법 제37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구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지원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
 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비
2.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양곡지원
3.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냉·난방비
4. 교육·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
5. 물품 및 시설 유지관리
6. 설·추석 위문품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형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교육·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7조(정산 등) 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운영비 및 냉·난방비 등을 말한다)을 지원 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에 정산서를 제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매월 10일까지 운영비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 및 회원관리, 운영비 사용·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1. 수입·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
3.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9조(결연사업)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노인복지법

[시행 2022. 3. 22.] [법률 제18609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력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 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2.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3.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4. 문화재의 보호 및 안내
- 4의2.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
5.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925호, 2022. 9. 27., 일부개정]

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2.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③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 7. 24., 2018. 4. 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